

꼭! 신고하세요!

당신의 연구실에 **고위험병원체**와 **유전자변형생물체(LMO)**가 있습니까?

고위험병원체의 허가, 신고 및 보고

- 분리신고 : 고위험병원체를 분리, 확인시
- 이동신고 : 고위험병원체 이동 계획시(이동 전)
- 반입허가 : 고위험병원체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 계획시(반입 전)
- 보존현황 보고 : 1년에 2회(1월, 7월)

✓ 잠깐! 고위험병원체란?

생물테러의 목적에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유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

- 콜레라균(*V. cholerae* O1·O139), 이질균(*S. dysenteriae* Type 1), 보툴리눔균(*C. botulinum*) 등 35종 병원체
- ※ 근거 법령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시행령 및 시행규칙

유전자변형생물체(Living Modified Organisms) 수입 및 개발·실험 국가 승인

- 수입 승인 : 수입 계획단계시(수입 전)
- 개발·실험 승인 : 개발·실험 계획시(실험 전)

✓ 수입 및 개발·실험 국가승인 대상 LMO란?

- 종명까지 명시되지 않고, 인체 병원성 여부가 불분명한 미생물을 이용, 얻어진 LMO
- 단백질 독소생산능력(척추동물 체중 1kg당 LD50이 100ng 미만)을 가진 LMO
- 의도적으로 도입된 억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LMO
- '고위험병원체'를 이용, 얻어진 LMO

- ※ 근거 법령 :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의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

신고처

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(☎ 043-719-8041~4)

※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<http://biosafety.cdc.go.kr> 참조



※ 상기 사항(미신고, 미허가, 미승인) 위반시 해당 담당자와 기관장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.



보건복지부



질병관리본부